

정 부 합 동 감 사 결 과

시 정 요 구

제 목 농지보전부담금 체납액 징수 소홀

기 관 명 충청남도, 천안시, 서산시

내 용

충청남도에서는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 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농지전용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농지법」 제38조 및 제39조의 규정에 따르면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자는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이 부과·통지한 농지보전부담금¹⁾을 납기내 납부하여야 하며,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농지전용 허가를 취소하거나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같은 법 제2조에 규정되어 있는 농지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의 개발행위허가를 하거나, 「건축법」 제11조제1항의 건축허가 등을 한 때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1조제1항 및 「건축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농지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농지전용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처리 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농지에 건축허가 등의 신청이 있을 경우 건축허가 부서 등 인·허

1) 농지보전부담금은 m²당 개별공시지가의 100분의 30을 부과하며, m²당 5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 농지조성비(1975년 도입, 2006.1.22. 농지법 제40조 개정으로 농지보전부담금으로 변경) : 농지전용사업자에 대해 국민식량의 공급기반인 농지의 대체조성 비용으로 부과
- 농지전용부담금(1992년 도입, 2002.1.1. 농업·농촌기본법 제41조 개정으로 폐지) : 농지전용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농어촌구조개선사업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부과

가부서에서는 농지전용허가 담당부서에 농지전용 여부를 협의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농지전용허가 담당부서에서는 「농지법 시행령」 제33조에서 정하고 있는 심사기준에 따라 허가할 경우에는 「농지전용 업무처리규정」 제21조제3항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 납입을 확인한 후에 허가증을 교부하도록 협의조건을 부하여 동의하여야 하고, 건축허가부서 등 인·허가 부서에서는 건축허가증 등 교부 시 농지보전부담금 납부사실을 확인한 후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그런데 체납이 발생된 충청남도, 천안시, 서산시에서는 체납사실에 대해 납부 독촉 등의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정부합동감사 기간(2017. 11. 15.~ 12. 1.) 중 확인한 결과, 아래 [표] ‘농지보전부담금 체납액 현황’과 같이 총 13건에 5,065,695,090원의 농지보전부담금이 체납된 상태로 있다.

[표] 농지보전부담금 체납액 현황(2017.10월말 기준)

부과권자	건수	체 납 현 황(원)				
		농지보전부담금	가산금*	농지조성비	농지전용부담금	계
계	13	4,627,550,950	252,398,300	28,195,200	211,363,140	5,065,695,090
충청남도	2	1,114,661,460	53,905,070	-	-	1,168,566,530
천안시	8	3,504,342,790	198,065,900	-	-	3,648,596,190
서산시	3	8,546,700	427,330	28,195,200	211,363,140	248,532,370

* 가산금(5%) 부과는 2009.5.27.부터 적용

조치할 사항 충청남도지사, 천안시장, 서산시장은

[시정] 농지보전부담금 체납액 5,065,695,090원을 국세체납처분 예에 따라 징수하거나 체납자에 대해 농지전용 동의조건에 의한 허가취소 등 적절한 조치를 하고, 앞으로 위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